

고민없는 무상증여 지분처리의 위험성(2)

글 _ 조완석(공인회계사)

지난 49호에서는 자기주식의 무상증여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회계처리와 세무상의 위험상황에 대한 질문을 함께 고민해 봤다. 질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는 자기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대한 취득 및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 사항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상의 리스크로 구분될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우선 회계처리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다음 호에서 세무부분을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자.

재무상황에 맞지 않는 회계처리

지난호에 언급한 회사는 경영이 어려워져 대표이사가 자신의 지분 중 일부를 회사에 무상으로 내놓고, 회사는 이를 적당한 외부사람에게 처분해서 신규 자금의 유입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런데 회사는 대표이사의 주식을 증여받은 해에 그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고 다음해가 되어야야 제3자에게 매각하게 됐다.

이 회사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이렇다.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시점에서 회사의 재무상태는 설립이후 제 3기로서 계속해서 결손을 보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또한 회사의 주주 중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

이 회사의 간략한 재무적 상황과 회계처리 내역을 살펴보자.

회사의 주당 액면가액은 500원으로 대주주 지분 1만주를 증여 받았으며, 설립이후 3기째 계속해서 결손을 보고하고 있었다. 설립이후 현재까지 주주간의 주식거래는 모두 액면가액으로 이루어졌었고, 현재시점의 상속증여세법상의 주식평가액은 주당 300원이며, 액면가액으로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자. 이러한 경우 회사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았다.

1) 취득시 : 자기주식 300만원 / 자산수증이익 300만원

2) 기말결산시 : 회계처리 없음

3) 처분시 : 현금 500만원 / 자기주식 300만원 / 자기주식처분이익 200만원

이러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회사의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우선 무상으로 증여받은 자산이므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여 특별이익으로 당기순이익에 반영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수증이익을 적정하게 계상하기 위하여 세무상의 평가액으로 그 가액을 계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처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재무상황에 맞는 회계처리

그러나 기업회계기준 예규 해석적용사례에 의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무상증여하는 경우 취득시점의 회계처리는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자기주식의 성격이 자산이 아닌 자본의 차감항목이라는 특성 때문으로 자본항목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하며, 일반적으로 자산이 가지고 있는 회계적 특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에 논리적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는 회계처리로서 올바른 회계처리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취득시와 기말 결산시 : 별도의 회계처리 없음. 단, 수증받은 자기주식의 수를 비망기록하여 관리하고 주석으로 공시함.

2) 처분시 : 현금 500만원 / 자기주식처분이익 500만원

이상으로 지난호의 질문에서 언급된 1), 2), 3) 및 8)번에 대한 의문은 해결이 되었다. 나머지 질문들에 대한 해결방법은 다음호에서 살펴본다.

(이어지는 내용은 53호에 게재됩니다)